

## “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필요성 및 도입방안” 국회토론회 개최

국회 심재철(한나라당, 경기 안양 동안)의원실에서는 2010년 7월 12일(월)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(1층) 소회의실에서 “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필요성 및 도입방안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.

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강원대학교 김두교수의 발제로 열리며 토론자로는 보건복지가족부, 농림수산식품부, 대한약사회, 한국소비자원, 대한양돈협회, 대한수의사회 관계자가 참가하여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주제로 약사법 및 수의사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토론 및 보완대책 등의 수립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.

한편, 수의사처방제는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동물약품에 대하여 수의사의 처방(지시)에 의하여 동물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대책('07) 및 식품안전대책('08)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,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사법(처방동물약품 구분) 및 수의사법 (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)을 개정하여야 한다.

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 동물약품의 오·남용을 막을 수 있어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, 불필요한 동물약품의 사용의 방지와 수의사로 인한 질병관리체계가 정착되어 축산업의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가축질병, 나아가서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는 수의사처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, WHO·OIE·FA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동물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의사처방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세계 각 국에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.  